

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4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4일

발 의 자 : 이영실, 강동길, 김경영,
김경우, 김인제, 김제리,
김혜련, 김화숙, 문병훈,
박기열, 박기재, 이경선,
이병도, 이상훈, 이승미,
이정인, 임종국, 장인홍,
정진철, 조상호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단 아동학대 사건으로 시민들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으며,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강력대책이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.
-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특히 학대위험 아동 조기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, 학대위기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발견하여 사전적·예방적으로 고위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자치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원하여 아이들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하고,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함(안 제11조의4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·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4(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) 시장은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4(아동학대 위기징후 조</u> <u>기발견) 시장은 아동학대 위기</u> <u>아동을 조기발견하여 보호할 수</u> <u>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</u> <u>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</u> <u>한다.</u>